

서울고등법원
변 론 조 서

1차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기 일 : 2006. 5. 26. 17:00
판 사 이 정 렬 장 소 : 서관 305호
판 사 이 우 철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고지된
선고 기일 : 2006. 6. 16. 14:0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항소인) 김명호 출석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수령 출석

재판장 판사

원고의 2006. 5. 18.자 변론의 녹음신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를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하고, 원고가 제출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은 항고
대상이 아님을 고지

원고의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취하에 관
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구를 유지하고 법원이 판단하기로 하였
으므로 제1회 변론준비기일조서 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쌍 방

변론준비기일 결과 진술

원 고

2006. 5. 19.자 준비서면 진술

재판장 판사(원고에게)

문 : 강제29호증의 1내지33으로 제출된 답안지 중 일부는 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1995년 1학기 답안지인가요

위 등본입니다
2006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의봉



답 : 예.

문 : 갑제30호증의 1내지3으로 제출된 강의출석부에 기재된 숫자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은 퀴즈 점수입니다. 0인 것은 0점이라는 얘기이고, 맨 위에 있는 1주·2주·3주에 기재된 숫자는 만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퀴즈점수 내지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점수입니다.

원 고

다음과 같이 진술

1. 재임용관련소송으로 1977. 9. 28. 77다 300의 경우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교수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임용 예정되어 진다고 보아진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예가 없으므로 위 판례에 반한 판결은 위법판례이다

1. 원고의 재임용탈락이 95학년도 성대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며, 피고의 석명사항에서도 성적평가에 의해서 징계 또는 재임용 탈락한 예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다

1. 대법원 2000. 6. 9. 98두 16613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한계를 벗어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긋난다.

1. 원고의 재임용탈락사유는

첫째, 징계사유설명서 중 입학시험채점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둘째, 성대수학과와 수학교육과 교수에 의한 허위증언으로 입시 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고 하면서 정직 3개월에 처했다고 하는 증언서류를 냈다는 것. 셋째, 징계의결요구를 했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녹취록이다.

쌍 방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변론종결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